

배포 일시	2022. 10. 31.(월)		
담당 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종오 (044-201-3817) 팀 장 양찬운 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상준 (044-201-4756) 사무관 성경림 (044-201-3813)
보도일시	2022년 11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31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·행정예고 -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(10.4) 후속조치, 택시부제 해제 등 8건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,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“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”을 발표(10.4)하였으며,
  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, 행정규칙 개정안(3건)에 대해 10.31(월)~11.21(월)까지 행정예고하고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안(5건)은 11.1(화)~12.12(월)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- 대책 발표 이후,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(반반택시 10.28 / 타다·티머니 11.1<sup>예정</sup> / 카카오 11.3<sup>예정</sup>),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·운영(10.26~),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허용(10.28) 등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였고,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.

	주요내용	개정되는 법령	입법·행정예고 기간
①	택시부제 해제	행정규칙 <sup>1)</sup>	10.31~11.21
②	대형승합·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	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	11.1~12.12
③	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	행정규칙 <sup>2)</sup>	10.31~11.21
④	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	여객자동차법 시행령	11.1~12.12
⑤	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	행정규칙 <sup>3)</sup>	10.31~11.21
⑥	택시 차령기준 완화(주행거리 고려)	여객자동차법 시행령	11.1~12.12
⑦	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	여객자동차법 시행령	
⑧	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	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	

\* 행정규칙: <sup>1)</sup>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/ <sup>2)</sup>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/ <sup>3)</sup>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

□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【 ① 택시부제 해제 】

○ '73년 석유과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으나,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어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(전체 택시의 약 98%, '22.7)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택시 공급력을 저하\*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.

\* 택시부제 전면 해제(춘천시, '22.4) 후, 심야시간 택시 운행 약 30% 증가

○ 이에,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, 행정규칙(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) 개정안은 공포(11.22 예상)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·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상황, 국민·택시업계·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·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\*를 거쳐야 한다.

\* 개정안 공포 후 수도권은 3개월 이내, 그 외 지자체는 6개월 이내 심의

※ 다만, 심야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 경우에는, 개정안이 공포·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 부제(3부제)가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

### 【 ② 대형승합·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/ ③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】

○ 現 택시시장은 중형택시가 절대 다수(전체 택시의 약 98%, '22.7)이고, 대형승합·고급택시 수요가 증가(심야 배차성공률 46~58%'<sup>22.1</sup> → 대형승합 26%, 고급 24%'<sup>22.6</sup>)하고 있으나, 대형승합·고급택시(전체 택시의 약 1%, '22.7)에 대한 진입장벽\*이 높아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.

\* 개인택시: 1)면허 취득 시 무사고 5년 필요하고, 2)중형택시 → 대형승합·고급택시 전환 시 무사고 5년 추가로 필요(법인택시에는 미적용)

\* 친환경택시: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고급택시 등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부분 중형택시로 운영

- 앞으로는, 개인택시의 ‘중형 → 대형승합·고급택시’ 전환요건(무사고 5년)을 폐지하는 등 신고(지자체)를 통해 대형승합·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,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\*하여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.

\* 자동차 차종분류 국제화 및 일원화 연구(국토부·교통研, '18년)

$$: \text{친환경 자동차 출력(KW)} = 0.053 \times \text{내연기관 자동차 배기량(CC)} + 7.5$$

☞ 고급택시 기준: 現220KW → 改160KW / 모범택시 기준: 現190KW → 改110KW

#### 【 ④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/ ⑤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】

-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(법인택시 회사)로 복귀하여, 차고지에서 밤샘주차(00시~04시) 및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는 등 택시 운행효율이 저하\*되고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.

\* 다수의 차고지 외곽에 위치 → 택시운행 종료·개시(출·퇴근 및 근무교대)를 위해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,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 발생

- 따라서,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여 심야 택시 운행효율을 높이고,

-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택시기사 음주 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\*하도록 개선하여, 택시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\* 현재 전세버스는 차고지 밖 음주확인 가능, 법인택시도 차고지 밖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된 장비를 활용하여 음주 측정(본인인증)이 가능한 특례 부여(ICT규제샌드박스: 카카오 '21.1 및 i.M 택시 '22.7)

#### 【 ⑥ 택시 차령기준 완화 / ⑦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】

- 차령제도\*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택시의 차량충당연한\*\*(1년 이내)도 제도 도입('02.6)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·품질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.

\* 중형택시: 개인 7년 + 연장2년 / 법인 4년 + 연장2년 ☞ 이후에는 택시운행 불가

\*\* 택시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는 등록 후 1년 이내 조건 필요(참고: 버스 6년)

- 이에, 택시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\*을 반영하여 차령제도\*\*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고,

\* 법인택시 운행거리(6년, 만km): 서울 56 > 경기 52 > 인천 40 > 충남 38 > 강원 33

\*\* 해외사례: 일본·네덜란드 차령제도 미운영(자동차 검사를 통해 부적절 차량 퇴출)

-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‘1년 이내 → 2년 이내’로 완화하여, 신차급 차량에 대해서는 택시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.

### 【 ⑧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】

-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,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, 사전 확정 요금제\* 등이 가능하여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.

\* (예) 택시 승차 1~2시간 전 택시 예약 → 택시 승차 후 확정된 요금 납부

- 따라서, 현재는 대형승합·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하여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·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“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, 개인 택시 심야 운행조,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,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보마당/법령 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하고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\*할 수 있다.

\*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과 / 전화: 044-201-4755 / 팩스 044-201-5581